

평창군아동위원정수등에관한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1. 회 부 경 위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1. 3. 3. 평창군수(환경복지과장)
- 나. 회 부 일 자 : 2001. 4. 17
- 다. 상 정 일 자 : 제84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제1차 조례특위(2001.4.17)
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기획실장 신대송)

가. 제 안 이 유

- 아동복지법 제6조의 규정에의거 평창군 아동위원 정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나. 주 요 골 자

- 위원의 임무에 대하여 규정(안 제2조)
- 위원의 정수에 대하여 규정(안 제3조)
- 위원의 위촉에 대하여 규정(안 제4조)
- 위원의 임기에 대하여 규정(안 제5조)
- 위원의 수당에 대하여 규정(안 제6조)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: 박태영)

- 본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제정되는 조례임.
- 아동복지법 제6조에서는 시·군·구에 아동위원을 두고 지역내

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조사·아동복지에 관한 원조 및 지도 기타 아동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고 위임하고 있음

○ 따라서 평창군 아동복지위원 정수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내용이 상위법령과 부합하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

○ 그러나 위원의 정수 책정문제와 위원임기를 3년으로 정한 이유는 분석할 필요가 있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붙임:평창군아동위원정수등에관한조례안 1부